

제 안 설 명 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영 주 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 29

제출년월일 : 2000. 8.

제 출 자 : 영 주 시 장

1. 개정이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 추가신설됨에 따라 7급 상이자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국가 유공자 상이등급 1급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내지 7급까지 적용함(안 제2조)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참고자료 : 덧붙임

가. 표준안(2000. 3. 31 도세정 13400-10584) 공문사본 1부.

나. 관련법령(발췌) 1부.

다. 입법예고 결과 1부.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영주시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중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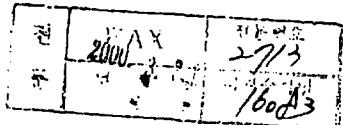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p> <p>②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u>1급</u> 내지 <u>6급</u>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단서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p> <p>-----<u>1급</u> 내지 <u>7급</u> -----</p> <p>-----</p> <p><현행과 같음></p>



관인생략

국내외 경국 함께 하는 300만

경상북도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1445-3 /☎ (053)950-2311 /FAX (053)950-2319
 세정회계과 과장 박진순 사무관 박현규 담당자 최현진

문서번호 세정 13400-10584

서행일자 2000.03.31 (준영구)

공개여부 공개

받 을 시장, 군수

청 조 지방세담당과장

감 면 조례(안) 통보

선 형	국장	- 17-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0. 3. 31	
	번호	1851	결 재
	처리 과	세무과	세무과장
	담 담 자	13. 차신	기록 담당
	심사자		심사일

제 목 지방세감면조례(통보) 개정조례(안) 통보

- 행정자치부 세제 13400-378(2000. 3. 27)호와 관련입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 대상자의 지방세 면제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음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
로 반영여부를 결정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유공자 지방세면제 확대에 대한 행정자치부 검토자료 1부
 2. 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부 끝

경상북도지사

전결 세정회계과장

국가유공상이자 지방세면제 확대 건의에 대한 검토

□ 건의내용

-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2000.1.1부터 1등급(7급) 이 추가 신설됨에 따라

※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제1항('99. 8. 31.개정)

- 신설된 7급 상이자의 보철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를 요청

- 대상인원 : 5~6천명 정도(현재. 신청 접수중임)

- 상이 7급 : 신체장애율이 10~15% 정도의 상이자

※ '99년말 현재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6급 해당자(전국)

- 총 55,826명(차량 소유자 24,992명)

□ 현행 감면조례 규정

- 근거규정 : 도세 및 시.군세감면조례 제2조

- 감면대상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자동차세, 면허세 면제

□ 검토의견

- 국가를 위해 희생한 1급부터 6급까지의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예우 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들에 대한 면제 건의를 수용하는 것이 협평 차원에서 타당하고
- 국세인 특별소비세에서 상이등급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를 하고 있고, NPG 연료사용 범위에 있어서도 상이등급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 각 시·도의 의견을 조회한 결과, 9개 시·도에서 면제 확대에 찬성하고 (서울 50% 감면, 대전 세수보전 요청), 7개 시·도에서는 지방재정 감소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므로,
-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통보하되, 지방자치단체 별로 면제 확대 수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항 본문중 "6급"을
"7급"으로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등록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3)(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경상북도○○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p> <p>(②)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u>5급</u>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 존. 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단서생략)</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①(현행과 같음)</p> <p>②-----</p> <p>- - - - <u>7급</u> - - - -</p> <p>- - - - -</p>

관련 법령(발췌)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②<생 략>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제14조관련)

등급	분류번호	신체상이 내용
1급1항~6급2항		<생 략>
7급	201	·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자 · 두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인 자
	202	· 한눈 안구의 작용이 평평한 자
	203	· 한눈의 눈꺼풀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자
	301	· 두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2	· 한귀가 청력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3	· 한귀가 완전 상실된 자
	304	· 코가 결손되어 취각 또는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305	· 상,하악 차아중 7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가한 자
	306	· 치아외상, 악안면 파편잔사 및 반흔조직 등으로 치아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401	·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있는 자
601	· 외모에 흥터가 남아 있는 남자	
702	· 흉복부장기 등의 장애로 취업 가능한 직종범위가 제한된 자	
703	· 생식기 기능에 장애가 남은 자	
801	·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끌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802	· 척추부상으로 경미한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3	·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외한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상실한 자	
804	· 한팔의 3대 관절중의 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5	·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806	· 한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807	· 한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808	· 한발의 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상실한 자	
809	· 한발의 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입 범 예 고 결 과

- 조례명 :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예고방법 : 영주시보 제241(2000년 7월 10일)에 게재
- 예고기간 : 2000년 7월 10일 ~ 2000년 7월 30일(20일간)
- 의견제출여부 : 없음

의안 검토 보고서

1. 의안

- 의안번호 : 제129호
- 의안명 :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 해당부서 : 행정지원국 세무과

2. 제안이유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 추가신설됨에 따라 7급 상이자에 대하여도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내지 7급까지 적용함(안 제2조)

4. 검토의견

- 영주시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국가유공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 추가신설됨에 따라 종전의 1급내지 6급까지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1급내지 7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임.
-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국가유공자동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99. 8. 31 법률 제6011호로 개정 공포되어 2000. 1. 1부터 상이자의 등급이 1등급(7급) 추가신설 시행됨에 따라
 -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상이자들에 대하여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로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확대 면제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2000. 9.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